

「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 
고시」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제출

개정(안)	수정의견	이유 (상세하게 기재)

※ 2021.7.19.(월) 까지 본회 이메일 cereal@kcba.or.kr 로 제출